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1092
------	-------

제안연월일 : 2011. 3. 1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66호	정 부	'08. 10.22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법제사법위원회 (‘08.11.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00호	홍재형의원 등 10인	'09. 2. 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09. 4.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53호	이상민의원 등 10인	'09. 2.11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09. 4.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13호	박영선의원 등 13인	'09. 2. 25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09. 4.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01호	노철래의원 등 12인	'09. 3. 19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법제사법위원회 (‘09. 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99호	노철래의원 등 33인	'09. 7. 6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법제사법위원회 (‘09. 9.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218호	우윤근의원 등 10인	'10. 9. 1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법제사법위원회 (‘10.12. 7)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2011. 3. 10)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및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 신설)

- (1)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3) 이와 같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모(私募) 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 설립의 편의 제고(안 제291조, 제329조 및 제546조)

(1)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 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3) 이와 같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안 제344조, 제345조 및 제346조, 안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3까지 신설)

- (1)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2)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안 제356조의2 및 제478조 제3항 신설)

- (1)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3) 앞으로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안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 신설)

- (1)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 (3) 이와 같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안 제397조의2 신설)

- (1)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2)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 (3) 이와 같이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안 제398조)

- (1)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2)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3) 이와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사의 책임 감경(안 제400조제2항)

- (1)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하는 것 외에는 책임감면 규정이 없음.
- (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 (3) 이와 같이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 이사의 진취적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집행임원제도 도입(안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신설)

- (1) 대규모 상장회사(上場會社)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 이사회에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안 제 446조의2 신설, 안 제447조 및 제447조의4, 현행 제452조, 제 453조, 제453조의2, 제454조부터 제457조까지 및 제457조의2 삭제)

- (1) 근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으나 상법의 회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 (3) 앞으로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 제460조, 안 제461조의2 신설)

- (1)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 (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3) 이에 따라 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도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타. 배당제도 개선(안 제462조제2항, 안 제462조의4 신설)

- (1) 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음.
- (2)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함.

(3) 앞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파. 사채제도의 개선(안 제469조 및 제481조부터 제485조까지, 현행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 삭제, 안 제480조의2 및 제480조의3 신설)

(1)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사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제542조의13 신설)

(1)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

여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3)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거.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현행 제545조 삭제, 안 제556조, 제571조 및 제607조)

(1)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을 위한 규정들은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을 폐지함으로써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편에 제4장의2(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제18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登記)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2(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에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

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③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25(퇴사원인) 사원의 퇴사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

다.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

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6절 해산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제7절 조직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청산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清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제28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2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의 액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제3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334조를 삭제한다.

제3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5 중 “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을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으로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외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償還株式)”이라 한다]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

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
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 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 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43조의2를 삭제한다.

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4조의2 및 제3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 및 제3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

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제34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5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

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35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6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제3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본의 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제360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제360조의7의 제목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을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을 “자본금”으로, “공제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을 “자본금”으로, “공제한”을 “뺀”으로 한다.

제360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제36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제한”을 “적은”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본의 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을 “이익배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60조의18의 제목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을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본”을 “자본금”으로, “공제한”을 “뺀”으로 한다.

제3편 제4장 제2절에 제4관(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

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

여야 한다.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3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0조를 삭제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

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3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제382조제3항제1호 중 “종사하는 이사”를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으로 “감사”를 “감사·집행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를

“감사·집행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감사”를 “감사·집행임원”으로,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감사”를 각각 “감사·집행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83조제4항 중 “제398조, 제416조 본문”을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90조”를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로, “제399조제2항”을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62조”를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을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91조제2항 전단 중 “動映像 및 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通信手段”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한다.

제3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

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제3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3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3조제6항 중 “第3項과 第4項”을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 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는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

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제412조의 제목 “(職務와 報告要求·調査의 權限)”을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2조의4를 제412조의5로 하고, 제4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4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2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
(未償却額)

제420조의4를 제420조의5로 하고, 제4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제3편제4장제6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38조 및 제4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3편제4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회사의 회계

제3편제4장제7절에 제4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 제454조부터 제457조까지 및 제45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

·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의 제목“(準備金の 資本轉入)”을“(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資本”을“자본금”으로 한다.

제4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제2항 중 “數種의 株式”을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462조의3제1항 중 “金錢으로 이익을”을 “이익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第516條의9”를 “제516조의10”으로, “第370條第1項, 第457條第2項, 第458條”를 “제4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第462條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제4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63조를 삭제한다.

제4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

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의 제목 “(配當金支給時期)”를 “(이익배당의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

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제4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 제4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 제10호 · 제13호 ·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의2 및 제4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481조 및 제4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483조의 제목 “(受託會社의事務承繼者)”을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

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제4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493조의 제목 “(社債發行會社 또는 受託會社의 代表者의 出席)”을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제4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5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

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5조 및 제50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제5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의 제목 “(受託會社에依한取消의訴)”을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는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13조의2제2항 중 “第418條第2項의 規定”을 “제418조제3항”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6조제1항 중 “第346條第2項”을 “제3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16조의2제2항제5호 중 “第516條의8第1項”을 “제516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516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제516조의7부터 제51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16조의8부터 제516조의11까지로 하고, 제5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6조의9(종전의 제516조의8)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4조제2항제10호의2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

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6조의10(중전의 제516조의9) 전단 중 “第516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2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을 “합병으로 이익배당을”로 한다.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5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2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제527조의3제1항 본문 중 “100分の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分の 2”를 “100분의 5”로 한다.

제530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第2項 및 第5項”을 “제1항 및 제436조”로 한다.

-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제530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資本”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제53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5호 중 “資本”을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53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4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542조의3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 집행임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사”를 “집행임원·감사”로, “이사”를 “이사·집행임원”로 한다.

제542조의6제5항 중 “제542조”를 “제408조의9 및 제5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24조”를 “제324조, 제408조의9”로 한다.

제542조의8제2항제6호 중 “이사”를 “이사·집행임원”으로 한다.

제542조의8제4항 중 “2분의 1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단서의”를 “단서에서 규정하는”으로, “경우”를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을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로, “주주총회일”을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로 한다.

제542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제542조의9제2항제1호 중 “이사”를 “이사·집행임원”으로 한다.

제542조의10제1항 단서 중 “이 법”을 “이 절”로 한다.

제542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이사”를 각각 “이사·집행임원”으로 한다.

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의 총액

제545조를 삭제한다.

제5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5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4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5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5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64조의2 및 제565조제1항 중 “資本의”를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5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제572조제1항 중 “資本의”를 “자본금”으로 한다.

제576조 제명 “(營業讓渡等과事後設立)”을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76조제2항 중 “資本”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57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제581조제1항 및 제582조제1항 중 “資本”을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5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제586조 및 제5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出資)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588조 본문, 제589조제1항 및 제590조 중 “資本”을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591조 및 제59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

채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 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93조제1항, 제594조제1항·제2항 및 제595조제1항 중 “資本”을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596조 중 “제334조”를 “제421조제2항“으로, ”資本“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597조, 제604조제2항 및 제605조제1항 중 “資本”을 각각 “자본금”으로 한다.

제6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

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제6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22조제1항 중 “理事”를 “이사, 집행임원”으로 한다.

제6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제6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1조제1항제2호 중 “資本”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63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

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4조의3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회사가 제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으로 한다.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編)에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받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꺾(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質權)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消却)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사채모집 위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9條(會社의 商號) 會社의 商號에는 그 種類에 따라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p>	<p>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p>
<p>第65條(有價證券과 準用規定) 金錢,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有價證券에는 民法 第508條 乃至 第525條의 規定을 適用하는 外에 어음法 第12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u>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u></p> <p>② 제1항의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제4장의2 합자조합</p>

<신 설>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 설>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신 설>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

<신 설>

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신 설>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137條(損害賠償의 額) ① 運送物이 全部滅失 또는 延着된 境遇의 損害賠償額은 引渡한 날의 到着地의 價格에 依한다.

第137條(損害賠償의 額)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第169條(意義) 本法에서 會社라 함은 商行爲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여 設立한 社團을 이른다.

第170條(會社의 種類) 會社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4種으로 한다.

第171條(會社의 法人性, 住所) ① 會社는 法人으로 한다.

② 會社의 住所는 本店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174條(會社의 合併) ① (생략)

② 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 또는 雙方이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는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이어야 한다.

③ (생략)

第180條(設立의 登記) 合名會社의 設立登記에 있어서는 다음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174條(會社의 合併)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80條(設立의 登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事項을登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會社를代表할社員을定한 때에는 그姓名
5. (생략)

第181條(支店設置의登記) ①會社의設立과同時에支店을設置하는境遇에는設立登記를한後 2週間內에支店所在地에서第180條各號의사항(다른支店의所在地를제외한다)을登記하여야 한다.

②會社의成立후에支店을設置하는 경우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그支店所在地와設置年月日을登記하고, 그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第180條各號의사항(다른支店의所在地를제외한다)을登記하여야 한다.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현행과 같음)

제181조(지점 설치의登記)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登記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登記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登記하여

③ (생략)

第182條(本店, 支店의 移轉登記)

① (생략)

② 會社가 支店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2週間내에 本店과 舊支店所在地에서는 新支店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登記하고, 新支店所在地에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다른 支店所在地를 제외한다)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생략)

第271條(登記事項) 合資會社의

設立登記에 있어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외에 各社員의 無限責任 또는 有限責任인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

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82條(本店, 支店의 移轉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 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

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 설>

제1절 설립

<신 설>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신 설>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
 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
 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
 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
 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
 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
 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
 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6.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신 설>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 설>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신 설>

<신 설>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신 설>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에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 설>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 설>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신 설>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

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 설>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③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25(퇴사원인) 사원의 퇴사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

<신 설>

를 준용한다.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익)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

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절 회계 등

<신 설>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신 설>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

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신 설>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

<신 설>

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신 설>

제6절 해산

<신 설>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

<신 설>

하여는 제230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절 조직변경

<신 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절 청산

<신 설>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清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

第289條(定款의 作成, 絶對的 記載事項) ①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이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각 발기인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1株의 金額

5. ~ 9. (생략)

②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는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의 4分の 1 이상이어야 한다.

第291條(設立當時의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會社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에 關하여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發起人全員の 同意로 이를 定한다.

1. 株式의 種類와 數

2. 額面以上の 株式을 發行하는 때에는 그 數와 金額

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89條(定款의 作成, 絶對的 記載事項)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신 설>

第299條(檢査人の 調査, 報告) ①

檢査人は 第290條 各號の 사항과 第295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 出資의 이행을 調査하여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檢査人は 前項의 調査報告書를 作成한後 遲滯없이 그 謄本을 各發起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檢査人の 調査報告書에 事實과 相違한 事項이 있는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對한 說明書를 法院에 提出할수 있다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第302條(株式引受의 請約, 株式 請約書의 記載事項) ① (생략)

②株式請約書는 發起人이 이를 作成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 5의2. (생략)

6.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7. ~ 10. (생략)

③ (생략)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생략)

②第1項의 設立登記에 있어서 는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생략)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第302條(株式引受의 請約, 株式 請約書의 記載事項) ① (현행과 같음)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5의2. (현행과 같음)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資本의 總額

3. · 3의2. ~ 3의4. · 4. (생략)

5.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6. · 7. (생략)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會社를 代表할 理事의 姓名 ·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10.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11. · 12. (생략)

③ 株式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시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에 있어서는 第2項第1號 · 第4號 · 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액

3. · 3의2. ~ 3의4.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 12. (현행과 같음)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 ·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삭제)

② 株式會社의資本은이를株式으로分割하여야한다

③ 株式의金額은均一하여야한다

④ 1株의金額은 100원이상으로하여야한다

<신설>

第329條의2(株式의 分割) ① (생략)

② 第1項의 경우에 分割후의 1株의 금액은 第3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第329條의2(株式의 分割)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 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생략)

第334條(株主의會社에對한相計禁止) 株主는納入에關하여相計로써會社에對抗하지못한다

第335條(株式의讓渡性) ①株式은他人에게 이를讓渡할 수 있다. 다만, 株式의讓渡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第340條(記名株式의登錄質) ①記名株式을質權의目的으로한境遇에會社가質權設定者의請求에依하여그姓名과住所를株主名簿에附記하고그姓名을株券에記載한 때에는質權者는會社로부터利益이나利子の配當, 殘餘財産의分配또는前條의規定에依한金錢의支給을받아다른債權者에優先하여自己債權의辨濟에充當할수있다

②·③ (생략)

第340條의2(株式買受選擇權) ①會社는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삭제>

第335條(株式의讓渡性)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를 승인 받도록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0條(記名株式의登錄質)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會社의 設立·경영과 技術革新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會社의 理事·監事 또는 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價額(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 이라 한다)으로 新株를 引受하거나 자기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 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 株式의 實質價額보다 낮은 경우에 會社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 지급하거나 그 差額에 상당하는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株式의 實質價額은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日을 기준으로 評價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없다.

1.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10 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인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 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理事·監事の選任과 解任 등 會社の主要經營事項에 대하여 사실상 影響力을 행사하는 者

3. 第1號와 第2號에 規定된 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할 新株 또는 讓渡할 자기의 株式은 會社の 發行株式總額의 100分の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第1項에 規定한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은 다음 各號의 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附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과 株式의 券面額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附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影響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規定된 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第340條의5(準用規定)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40條의5(準用規定)-----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

第341條(自己株式의 取得) 會社는다음의境遇外에는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取得하지 못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정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株式을消却하기爲한 때
2. 會社의合併또는다른會社의 營業全部의讓受로因한때
3. 會社의權利를實行함에있어 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必要한때
4. 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株主가 株式買受請求權을 행사한 때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償還株式)” 이라 한다]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第341條의2(株式買受選擇權附與 目的등의 自己株式取得) ①會社는 第3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目的으로 취득하거나 退職하는 理事·監事 또는 被用者의 株式을 讓受함으로써 자기의 株式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第462條第1項에 規定된 利益配當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會社가 第1項의 株式을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10 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로부터 有償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株式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號의 사항에 관하여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會社는 株主總會 決議후 6月 이내에 株式을 취득하여야 한다.

1.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의 姓名

2. 취득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취득할 株式의 價額

③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時期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株主總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41條의3(自己株式의 質取) 會社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20分の 1을 초과하여 자기의 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第341條第2號 및 第3號의 경우에는 그 限度를 초과하여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342條(自己株式의 處分) 會社는 第341條第1號의 경우에는 遲滯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

없이 株式失效의 節次를 밝아야 하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와 第341條의3 但書의 경우에는 相當한 時期에 株式 또는 質權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343條(株式의 消却) ① 株式은 資本減少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서만 消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의 定한바에 依하여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440條와 第441條의 規定은 株式을 消却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規定에 依하는 경우 외에 정기 總회에서 제434조의 規定에 依한 결의에 依하여 株式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依한 總회의

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規定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株式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株式의 처분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3. 株式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關한 規定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의 결의에 依하여 회사가 保有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關한 規定에 따라 株式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삭 제>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
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다.

第344條(數種의株式) ①會社는利
益이나利子の配當또는殘餘財産
의分配에關하여內容이다른數種
의株式을發行할수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각종의 株式의 내용과 數를 정
하여야 하며, 利益配當에 관하
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株式에 대하여는 定款으로 最低
配當率을 정하여야 한다.

③會社가數種의株式을發行하는
때에는定款에다른定함이없는境
遇에도株式의種類에따라新株의
引受, 株式의 併合·分割·消
却 또는 會社의 合併·分割로
인한 株式의 配定에關하여特殊
한定함을할수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
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
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
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
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
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
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第345條(償還株式) ①前條의境遇

에는利益配當에關하여優先的
內容이있는種類의株式에對하여
利益으로써消却할수있는것으로
할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는償還價額, 償
還期間, 償還方法과數를定款에
記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
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
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
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
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第346條(轉換株式의 發行) ①會社가數種의株式을發行하는境遇에는定款으로株主는引受한株式을다른種類의株式으로轉換을請求할수있음을定할수있다 이境遇에는轉換의條件, 轉換의請求期間과轉換으로因하여發行할株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식의數와內容을定하여야한다

②第344條第2項의規定에依한數種의株式의數中轉換으로因하여發行할株式의數는前項의期間內에는그發行을保留하여야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第347條(轉換株式發行의節次) 第346條第1項의 경우에는 株式請約書 또는 新株引受權證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轉換을請求할수있는期間

第350條(轉換의 효력발생) ①株式의 轉換은 그 請求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② (생략)
- ③第1項의 轉換權을 행사한 株式의 이익이나 利子の 配當에 관하여는 그 請求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末에 轉換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新株에 대한 이익이나 利子の 配當에 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請求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

수는 轉換청구기간 또는 轉換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第347條(轉換株式發行의節次) 제346조의 경우에는 株式청약서 또는 新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轉換청구기간 또는 轉換의 기간

第350條(轉換의 효력발생) ① 株式의 轉換은 주주가 轉換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轉換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轉換에 의하여 발행된 株式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轉換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營業연도 말에 轉換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新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

도의 직전 營業年度末에 轉換된 것으로 할 수 있다.

第351條(轉換의 登記) 株式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는 轉換을 請求한 날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週間내에 本店所在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第356條(株券의 記載事項) 株券에 는다음의事項과番號를記載하고 代表理事가記名捺印 또는 署名 하여야한다.

1. ~ 3. (생략)
4. 1株의金額
5. (생략)
6. 數種의株式이있는데에는그 株式의種類와內容
- 6의2. (생략)
7. 償還株式이있는데에는第345條第2項에定한事項
8. 轉換株式이있는데에는第347條에揭記한事項

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營業연도의 직전 營業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第356條(株券의 記載事項) 주권에 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현행과 같음)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 6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② (생략)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9. (생략)

④ (생략)

<신설>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적어야 -----.

1.·2. (현행과 같음)

3.-----
----- 자본금-----

4. ~ 6. (현행과 같음)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증가의 한도액) ①-----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2. (생략)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 ④ (생략)

⑤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뺀

1. 2. (현행과 같음)

②

자본금

뺀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⑦ (생략)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략)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5. (생략)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8. (생략)

②·③ (생략)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 적은 -----

-- 받아야 ----.

1.·2. (현행과 같음)

3.----- 자본금 -----

4.·5. (현행과 같음)

6.-----
----- 이익배당을 -----

7.·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 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 자본금 -----

 ----- 백 -----
 -----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

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신 설>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신 설>

第366條(少數株主에依한召集請求) ① (생략)

②第1項의請求가있는後遲滯없이總會召集의節次를밧지아니한 때에는請求한株主는法院의許可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第366條(少數株主에依한召集請求)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밧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를언어總會를召集할수있다.

③ (생략)

第367條(檢査人の選任) 總會는理事가提出한書類와監事の報告書を調査하게하기爲하여檢査人을選任할수있다

第370條(議決權이없는株式) ①會社가數種의株式을發行하는境遇에는定款으로利益配當에關한優先的内容이있는種類의株式에對하여株主에게議決權없는것으로할수있다그러나그株主는定款에定한優先的配當을받지아니한다는決議가있는總會의다음總會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 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터그優先的配當을받는다는決議가있는總會의終了時까지에는議決權이있다

②前項의議決權없는株式의總數는發行株式의總數의4分の1을超過하지못한다

第371條(定足數, 議決權數의計算)

①總會의決議에關하여는議決權없는株主가가진株式의數는發行株式의總數에算入하지아니한다

②總會의決議에關하여는第368條第4項의規定에依하여行使할수없는議決權의數는出席한株主의議決權의數에算入하지아니한다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

等) ①會社가다음의行爲를함에는第434條에定하는決議가있어야한다.

1. 營業의全部또는重要한一部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

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

等)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讓渡

- 2. 營業全部의賃貸또는經營委任, 他人과營業의損益全部를 같이하는契約其他이에準할契約의締結, 變更또는解約
- 3. 다른會社의營業全部의讓受
- 4. 회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다른회사의영업일부의讓受

② (생략)

第375條(事後設立) 第374條의規定은會社가그成立後 2年內에그成立前부터存在하는財産으로서營業을 爲하여繼續하여使用하여야할것을資本의 100分の 5 이상에該當하는對價로取得하는契約을하는경우에이를準用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② (생략)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현행과 같음)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營業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契約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생략)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1.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감사·집행임원-----
2. (현행과 같음)
3. -----
-----감사·집행임원-----
4. -----감사 및 집행임원-----
-----직계 존·비속
5. -----
-----감사·집행임원-----
6. -----

-----감사·집행임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第391條(理事會의 決議方法) ① (생략)

②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理事會는 理事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會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理事가 動映像 및 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通信手段에 의하여 決議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⑥ -----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
-----.

第391條(理事會의 決議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理事는 理事會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신설>

-----.

-----.

③ (현행과 같음)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第398條(理事와會社間의去來) 理事는理事會의承認이있는데에限하여自己또는第三者의計算으로會社와去來를할수있다 이境遇에는民法第124條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第399條(會社에對한責任) ①理事
가法令또는定款에違反한行爲를
하거나그任務를懈怠한때에는그
理事는會社에對하여連帶하여損
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②·③ (생략)

第400條(會社에對한責任의免除)
前條의規定에依한理事의責任은
總株主의同意로免除할수있다

第399條(會社에對한責任) ① 이
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
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
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
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하
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第401條(第三者에對한責任) ① 理事가惡意또는重大한過失로 因하여그任務를懈怠한때에는 그理事는第三者에對하여連帶하여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② (생략)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 ~

⑤ (생략)

⑥ 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한 경우 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는 訴의 취하, 請求의 포기·認諾·和解를 할수 없다.

<신설>

第401條(第三者에對한責任)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
-----.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
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
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
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
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
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
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
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
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
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
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
임한다.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신 설>

<신 설>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시 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신 설>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신 설>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
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
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
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
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

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
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

第412條(職務와 報告要求·調査의 權限) ①·② (생략)

<신설>

<신설>

第412條의4 (생략)

第416條(發行事項의決定) 會社가 그 成立後에 株式을 發行하는

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第412條(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第412條의5 (현행 제412조의4와 같음)

第416條(發行事項의決定) 회사가 그 성립 후에 株式을 발행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그러나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거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기로 定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설>

3. ~ 6. (생략)

第418條(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 ③ (생략)

<신설>

第420條(株式請約書) 理事는 株式請約書를 作成하여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規定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規定이 있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 6. (현행과 같음)

第418條(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第420條(株式請約書)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3. (생략)

4. 第417條의規定에依한株式을發行한때에는그發行條件과第455條의規定에依한未償却額

5. · 6. (생략)

<신설>

第420條의4 (생략)

第421條(株式에對한納入) 理事는新株의引受人으로하여금그配定한株數에따라納入期日에그引受한各株에對한引受價額의全額을納入시켜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 6. (현행과 같음)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20條의5 (현행 제420조의4와 같음)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第422條(現物出資의檢査)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第422條(現物出資의檢査)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第426條(未償却額의登記) 第417條의規定에依한株式을發行한境遇에株式의發行으로因한變更登記에는第455條의規定에依한未償却額을登記하여야한다

第435條(種類株主總會) ①會社가數種의株式을發行한境遇에定款變更함으로써어느種類的株主에게損害를미치게될때에는株主總會의決議外에그種類的株主의總會의決議가있어야한다

②·③(생략)

第436條(同前) 前條의規定은第344條第3項의規定에依하여株式의種類에따라特殊한定함을하는境遇와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種類的株主에게損害를미치게될境遇에準用한다.

第6節 資本의減少

항까지와 같음)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한다.

第435條(種類株主總會) ① 회사가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제6절 자본금의 감소

第438條(資本減少의決議) ①資本의減少에는第434條의規定에 依한決議가있어야한다

②資本의減少에關한議案의要領은第363條의規定에 依한 通知와 公告에記載하여야한다

第439條(資本減少의方法,節次)

①資本減少의決議에서는그減少의方法을定하여야 한다

②第232條의規定은資本減少의境遇에準用한다

③社債權者가異議를함에는社債權者集會의決議가있어야한다. 이境遇에는法院은利害關係人의請求에 依하여社債權者를爲하여異議의期間을延長할수있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445條(減資無效의訴) 資本減少의無效는 株主·理事·監事·清算人·破産管財人 또는 資本減少를承認하지아니한債權者에限하여資本減少로因한變更登記가있는날로부터 6月內에訴만으로主張할수있다.

第7節 會社의計算

<신 설>

第447條(財務諸表의 作成) 理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第447條의4(監査報告書) ①監事

는 第447條의3의 書類를 받은 날로부터 4週間내에 監査報告書を 理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監査報告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監査方法의 概要
2. 會計帳簿에 記載할 事項의 記載가 없거나 不實記載된 경우 또는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의 記載가 會計帳簿의 記載와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가 法令 및 定款에 따라 會社の 財産 및 損益狀態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の 財産 및 損益狀態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

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 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事由
5.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의 作成에 관한 會計方針의 變更이 妥當한지의 與否와 그 이유
6. 營業報告書가 法令 및 定款에 따라 會社의 狀況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與否
7.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가 法令 및 定款에 적합한지의 與否
8.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가 會社財産의 狀態 기타의 事情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第447條의 附屬明細書에 記載할 事項의 記載가 없거나 不實記載된 경우 또는 會計帳簿・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나 營業報告書의 記載와 合致되지 아니하는 記載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한 行爲 또는 法令이나

-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는 중대한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그 事實

11. 監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第449條(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①理事는 第447條 各號에 規定한 書類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第449條(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第451條(資本) 會社의資本은本法
에 다른規定이 있는境遇外에는
發行株式의額面總額으로 한다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
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
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
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
금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
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
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
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
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
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
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
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第452條(資産의評價方法) 會社の會計帳簿에 記載될 資産은 第31條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方法에 의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1. 流動資産은取得價額또는製作價額에依한다 그러나時價가取得價額또는製作價額보다顯著하게낮은때에는時價에依하여야한다
3. 金錢債權은債權金額에依한다 그러나債權을債權金額보다 낮은價額으로取得한때또는이것에準하는境遇에는相當한減額을할수있다 推尋不能의念慮가있는債權은그豫想額을減額하여야 한다
4. 去來所의時勢있는社債는決算期前1月の平均價格에依하고그時勢없는社債는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取得價額과社債의金額이다른때에는相當한增額또는減額을할수있다 推尋不能의念慮가있는社債에는第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삭 제>

3號後段의規定을準用한다 社債에準하 것도같다

5. 去來所의時勢있는株式은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決算期前1月の平均價格이取得價額보다낮을때에는그時價에依한다 去來其他의必要上長期間保有할目的으로取得한株式은去來所의時勢의有無를不拘하고取得價額에依한다 그러나發行會社의財産狀態가顯著하게惡化된때에는相當한減額을하여야한다 有限會社其他에對한出資의評價에도같다

6. 營業權은有償으로承繼取得한境遇에限하여取得價額을記할수있다 이境遇에는營業權을取得한後5年內의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을償却하여야한다

第453條(創業費의計上) ①第290條第4號의規定에依한支出額과設立登記에支出한稅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部に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金額은會社成立後또는開業前에利子を配當할것을定한때에는그配當을마친後 5年

<삭 제>

内の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の償却을하여야한다

第453條의2(開業費의 計上) ①開業의 準備를 위하여 支出한 금액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に 計上할 수 있다.

<삭 제>

②第1項의 計上金額은 開業後 3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 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4條(新株發行費用의 計上)

<삭 제>

①新株를發行한境遇에는그發行에 必要한費用의額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に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新株發行後 3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の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5條(額面未達金額의 計上)

<삭 제>

①第417條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을發行한境遇에는 額面未達金額의 總額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に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計上金額은 株式發行後 3年內의 每決算期에 均等額以上の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6條(社債差額의 計上) ①社債

<삭 제>

를 募集한境遇에 그 償還할 總額이

그募集에依한實收額을超過한 때의그差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 部に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金額은社債償還期限內的每決算期에均等額以上の償却을하여야한다

③第454條의規定은社債發行에 必要한費用의額에準用한다

第457條(配當建設利子の計上)

①第463條의規定에依하여配當한金額은貸借對照表資産의 部に計上할수있다

②前項의計上金額은開業後年6分以上의利益을配當하는境遇에 그6分을超過한金額과同額以上の償却을하여야한다

第457條의2(研究開發費의 計上)

① 新製品 또는 新技術의 研究 또는 開發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費用은 貸借對照表 資産의 部に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計上金額은 그 支出 후 5年內的 每決算期에 均等額 이상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

第458條(利益準備金) 會社는그 資本의 2分の 1에達할때까지每

<삭 제>

<삭 제>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決算期の金錢에 의한 利益配當額의 10分の 1이상의 金額을 利益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第459條(資本準備金) ① 會社는 다음의 金額을 資本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1. 額面以上の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額面을 超過한 金額

1의2. 株式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完 全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株式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設 立된 完 全모회사의 자본액을 超 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資本減少의 境遇에 그 減少額이 株式의 消却, 株 金の 返還에 要 한 金額과 缺 損의 填 補에 充 當 한 金額을 超 過한 때에 는 그 超 過 金額

3. 會社合併의 境遇에 消滅된 會社로부터 承繼한 財 產의 價 額이

매 結 算 期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以上을 이익준비금으로 積 立 하여야 한다. 但 然, 主 股 配 當의 경 우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그會社로부터承繼한債務額,
그會社의株主에게支給한金額
과合併後存續하는會社의資本
增加額또는合併으로因하여 設
立된會社의資本額을超過한때
에는그超過金額

3의2.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
한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會社 또는 存
續하는 會社에 出資된 財産의
價額이 出資한 會社로부터 承
繼한 債務額, 出資한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한 금액과 設立
된 會社의 資本額 또는 存續
하는 會社의 資本增加額을 초
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資本去來에서 발생한
剩餘金

②第1項第3號 및 第3號의2의 초
과금액중 消滅 또는 分割되는
會社의 利益準備金 기타 法定準
備金은 合併후 또는 分割·分割
合併후 存續 또는 設立되는 會
社가 이를 承繼할 수 있다.

第460條(法定準備金の使用) ①前
2條의準備金은資本의缺損填補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
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

에 充當하는 境遇外에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② 利益準備金으로 資本의 缺損의 填補에 充當하고서도 不足한 境遇가 아니면 資本準備金으로 이에 充當하지 못한다

第461條(準備金의 資本轉入) ①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準備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資本에 轉入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신설>

第462條(利益의 配當) ① 會社는

貸借對照表上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額을 限度로 하여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1. 資本의 額

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第461條(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자본금-----.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

는 積립된 資本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資本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株主總會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金額 범위에서 資本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金額을 공제한 額을 限度로 하여 利益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決算期까지積立된資本準備金과利益準備金の合計額

3. 그決算期에積立하여야할利益準備金の額

②前項의規定에違反하여利益을配當한때에는會社債權者는이를會社에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다

③第186條의規定은前項의請求에關한訴에準用한다

第462條의2(株式配當) ① (생략)

②第1項의 配當은 株式의 券面額으로 하며, 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株式으로 할 수 있

1. 자본금의 액

2. 그 決算기까지 積立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決算기에 積立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第462條의2(株式配當) ① (현행과 같음)

②-----
----- 종류주식

다.

③ ~ ⑥ (생략)

第462條의3(中間配當) ①年 1회
의 決算期를 정한 會社는 營業
年度중 1회에 한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株主에 대하여 金錢으로
이익을 配當(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②中間配當은 직전 決算期의 貸
借對照表상의 순자산액에서 다
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額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決算期의 資本의 額

2. ~ 4. (생략)

③·④ (생략)

⑤第340條第1項, 第344條第1
項, 第350條第3項(第423條第1
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
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第3
54條第1項, 第370條第1項, 第4
57條第2項, 第458條, 第464條
및 第625條第3號의 規定에 적용

--.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462條의3(中間配當) ①-----

-----이익을-----

-----.

②-----

-----.

1. 직전 決算기의 자본금의 액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516조의
10-----
-----제458조-----

에 관하여는 中間配當을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의 配當으로, 第350條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1項의 일정한 날을 營業年度末로 본다.

⑥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4項의 理事의 責任에 관하여, 第46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間配當을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 설>

⑥-----

----- 제462조제3항
및 제4항-----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第463條(建設利子の配當) ①會社

는그目的인事業의性質에依하여
會社의成立後2年以上그營業全
部를開始하기가不能하다고 認
定한때에는定款으로一定한 株
式에對하여그開業前一定한 期
間內에一定한利子を그株主에게
配當할수있음을定할수있다 그
러나그利率은年5分을超過하지
못한다

②前項의定款의規定또는그變更
은法院의認可를얻어야한다

第464條(利益等の配當의基準) 利

益이나利子の配當은各株主가
가진株式의數에따라支給한다
그러나第344條第1項의規定을
適用하는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第464條의2(配當金支給時期) ①

會社는 第464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を 第449條第1項의 승인
또는 第462條의3第1項의 決議
가 있는 날부터 1月 이내에 支
給하여야 한다. 다만, 第449條

대신 金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삭 제>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464條의2(이익배당의 지급시

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
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

第1項의 總會 또는 第462條의3 第1項의 理事會에서 配當金の 支給時期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第469條(社債의募集) 會社는理事會의決議에依하여社債를募集할 수있다.

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第470條(總額의制限) ①社債의總額은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資産額의 4倍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舊社債를償還하기爲하여社債를募集하는境遇에는舊社債의額은社債의總額에算入하지아니한다 이境遇에는新社債의納入期日, 數回에分納하는때에는第1回の納入期日로부터 6月內에舊社債를償還하여야한다

第471條(社債募集의制限) 會社는 前에募集한社債의總額의納入이完了된後가아니면다시社債를募集하지못한다

<삭 제>

第472條(社債의金額) ①各社債의金額은1萬원이상으로하여야 한다

<삭 제>

②同一種類의社債에서는各社債의金額은均一하거나最低額으로整除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第473條(券面額超過償還의制限)

社債權者에게償還할金額이券面額을超過할것을定한때에는그超過額은各社債에對하여同率이어야한다

第474條(公募發行, 社債請約書)

- ① (생략)
- ② 社債請約書는理事가이를作成하고다음의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 1. (생략)
- 2. 資本과準備金の總額
- 3. ~ 10. (생략)

<신설>

- 11. (생략)
- 12. 舊社債를償還하기爲하여第470條第1項의制限을超過하여社債를募集하는때에는그뜻

- 13. (생략)

<신설>

<신설>

<삭제>

第474條(公募發行, 社債請約書)

-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3.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 11. (현행과 같음)

<삭제>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

14. · 15. (생략)

③ (생략)

第478條(債券의發行) ① (생략)

②債券에는다음의事項을記載하고代表理事가記名捺印또는署名하여야한다

1. 債券의番號

2. 第474條第2項第1號, 第4號, 第5號, 第7號, 第8號, 第10號와第13號에揭記한事項

<신설>

<신설>

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478條(債券의發行)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 제4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 제10호 · 제13호 ·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 · 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

<신 설>

第481條(受託會社의辭任) 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는社債를發行한會社와社債權者集會의同意를얻어서辭任할수있다 不得已한事由가있는境遇에法院의許可를얻은 때에도같다

第482條(受託會社의解任) 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가그事務를處理함에不適任하거나其他正當한事由가있을때에는法院은社債를發行하는會社또는社債權者集

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책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會의請求에依하여이를解任할 수 있다

第483條(受託會社의事務承繼者)

①前2條의境遇에社債募集의委任을받은會社가없게된때에는社債를發行한會社와社債權者集會의一致로써그事務의承繼者를定할 수있다.

② (생략)

第484條(受託會社의權限) ①社債

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는社債權者를爲하여社債의償還을받음에必要한裁判上또는裁判外의모든行爲를할權限이있다

②前項의會社가社債의償還을받은때에는遲滯없이그뜻을公告하고알고있는社債權者에對하여는各別로이를通知하여야한다

③前項의境遇에社債權者는債券과相換하여償還額의支給을請求할수있다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第483條(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

계자) ①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 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

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第485條(2以上의受託會社가있는
境遇의權限,義務) ①社債募集
의委託을받은會社가2以上있을
때에는그權限에屬하는行爲는
共同으로하여야한다
②前項의境遇에各會社는社債權
者에對하여連帶하여償還額을
支給할義務가있다

第488條(社債原簿) 會社는社債原
簿를作成하고다음의事項을記載
하여야한다
1. 社債權者의姓名과住所
2. 債券의番號
3. 第474條第2項第4號,第5號,
第7號乃至第9號와第13號에揭
記한事項
4. 各社債의納入金額과納入年
月日
5. 債券의發行年月日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
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
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
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
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
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
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
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
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
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
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
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
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6. 各社債의取得年月日

7. 無記名式의債券을發行한때
에는그種類, 數, 番號와發行
年月日

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
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
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
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
행연월일

第490條(決議事項) 社債權者集會
는本法에다른規定이있는境遇外
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社債權者
의利害에重大한關係가있는事項
에關하여決議를할수있다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
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第491條(召集權者) ①社債權者集
會는社債를發行한會社또는社債
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가召集한
다

第491條(召集權者) ①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
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②社債總額의10分の 1以上에
該當하는社債權者는會議의目的
인事項과召集의理由를記載한書
面을前項의會社에提出하여社債
權者集會의召集을請求할수있다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
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
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

③·④ (생략)

第492條(議決權) ①各社債權者는社債의最低額마다 1個의議決權이있다

② (생략)

第493條(社債發行會社또는受託會社의代表者의出席) ①社債를發行한會社또는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는그代表者를社債權者集會에出席하게하거나書面으로意見을提出할수있다

②·③ (생략)

第495條(決議의 方法) ① (생략)

②第481條乃至第483條와前條의同意또는請求는前項의規定에不拘하고出席한社債權者의議決權의過半數로決定할수있다

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第492條(議決權)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第493條(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495條(決議의 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 설>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 368조의4를 준용한다.

第498條(決議의效力) ①社債權者集會의決議는法院의認可를얻음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社債權者集會의決議는總社債權者에對하여그效力이있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第500條(社債權者集會의代表者)

第500條(社債權者集會의代表者)

①社債權者集會는社債總額의50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0분의 1 이상을 가진社債權者中에서 1人 또는 數人의代表者를選任하여 그決議할事項의決定을委任할수있다

② (생략)

第501條(決議의執行) 社債權者集會의決議는社債募集의委託을 받은會社, 社債募集의委託을 받은會社가 없는때에는前條의代表者가執行한다 그러나社債權者集會의決議로써 따로執行者를定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第505條(期限의利益의喪失) ①會社가社債의利子の支給을懈怠한때또는定期에社債의一部를償還하여야할境遇에그償還을懈怠한때에는社債權者集會의決議에依하여會社에對하여一定한期間內에그辨濟를하여야한다는뜻과期間內에辨濟를하지아니할때에는社債의總額에關하여期限의利益을잃는다는뜻을通知할수있다 그러나그期間은2月을내리지못한다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②前項의通知는書面으로하여야 한다

③會社가第1項의期間內에辨濟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社債의總額에關하여期限의利益을잃는다

第506條(期限利益喪失의公告, 通知) 前條의規定에依하여會社가期限의利益을잃은때에는前條第1項의決議를執行하는者是遲滯없이그뜻을公告하고알고있는社債權者에對하여는各別로이를通知하여야한다

第507條(受託會社等の報酬, 費用)

①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 會社, 代表者또는執行者에對하여줄報酬와그事務處理에要할 費用은社債를執行한會社와의 契約에約定이있는境遇外에는法院의許可를얻어會社로하여금이를負擔하게할수있다

②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 代表者또는執行者는償還을받은金額에서社債權者에優先하여前項의報酬와費用의辨濟를받을수있다

<삭 제>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

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

第510條(準用規定) ①・② (생략)

③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와社債權者는營業時間內에언제든지前項의議事錄의閱覽을請求할수있다

第511條(受託會社에依한取消의訴) ①會社가어느社債權者에對하여한辨濟, 和解其他의行爲가顯著하게不公正한때에는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는訴만으로그行爲의取消를請求할수있다

②前項의訴는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가取消의原因인事實을안때로부터 6月, 行爲가있을때로부터 1年內에提起하여야한다

③ (생략)

第513條의2(轉換社債의引受權을 가진株主의權利) ① (생략)

②第418條第2項의規定은株主가轉換社債의引受權을 가진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第510條(準用規定)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第511條(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을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513條의2(轉換社債의引受權을 가진株主의權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18조제3항-----

-----.

第515條(轉換의請求) ①轉換을請求하는者는請求書2通에債券을添附하여會社에提出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第516條(準用規定) ①第346條第2項, 第424條 및 第424條의2의規定은轉換社債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② (생략)

第516條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① (생략)

②第1項의 경우에 다음의事項으로서定款에規定이 없는것은理事會가 이를決定한다. 그러나定款으로株主總會에서 이를決定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新株引受權을 行使하려는

第515條(轉換의請求) ①-----

 --.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516條(準用規定) ①제346조제4항-----

② (현행과 같음)

第516條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 5.-----

者の 請求가 있는 때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償還에 같음하여 그 發行價額으로 第516條의8第1項의 納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 8. (생략)

③ ~ ⑤ (생략)

第516條의4(社債請約書·債券·社債原簿의 記載事項)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는 社債請約書·債券 및 社債原簿에 다음을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516條의5第1項의 新株引受權證券을 發行할 때에는 債券에는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第516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을 맡을 銀行 기타 金融機關과 納入場所

4. (생략)

<신설>

-----제516조의9제1항-----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516條의4(社債請約書·債券·社債原簿의 記載事項) -----

1.·2. (현행과 같음)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현행과 같음)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同項의 納入을 한 때에 株主가 된다. 이 경우 第35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16條의10 (생략)

第523條(吸收合併의合併契約書)
合併할會社의一方이合併後存續하는境遇에는合併契約書에다음의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1. (생략)
2. 存續하는會社의增加할資本과準備金の總額
3. (생략)
4. 存續하는會社가合併으로因하여消滅하는會社의株主에게支給할金額을定한때에는그規定
5. ~ 7. (생략)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 -----
-----.

제516조의11 (현행 제516조의10과 같음)

第523條(吸收合併의合併契約書)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현행과 같음)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8. -----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그 한도액

9. (생략)

<신설>

第524條(新設合併의合併契約書)
合併으로因하여會社를設立하는
境遇에는合併契約書에다음의事
項을記載하여야한다.

1. 設立되는會社에對하여第289
條第1項第1號乃至第4號에揭
記한事項과數種의株式을發行
할때에는그種類, 數와本店所
在地

2. (생략)

3. 設立되는會社의資本과準備
金の總額

4. ~ 6. (생략)

第527條의3(小規模合併) ①合併

9. (현행과 같음)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
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
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
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
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第524條(新設合併의合併契約書)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

1. 設立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
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
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
와 본점소재지

2. (현행과 같음)

3. 設立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 6. (현행과 같음)

第527條의3(小規模合併) ①-----

후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
分の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存續하는 會社의 株主
總會의 승인은 이를 理事會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存續하
는 會社의 최종 貸借對照表상으
로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100分
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第530條의3(分割計劃書·分割合
併契約書の 승인) ①·② (생
략)

③第2項의 決議에 관하여는 第3
70條第1項의 株主도 議決권이
있다.

④ (생략)

⑤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발행한
경우에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 100
분의 10을 -----

----- 100분
의 5-----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530條의3(分割計劃書·分割合
併契約書の 승인) ①·② (현행
과 같음)

③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
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
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인하여 어느 종류의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第435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류의 株主의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⑥會社の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分割 또는 分割合併에 관련되는 각 會社の 株主의 부담이 加重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5項의 決議외에 그 株主 全員の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530條의5(分割計劃書의 기재사항) ①分割에 의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分割計劃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設立되는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 및 1株의 金額
3.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 당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4. · 5. (생략)

⑥-----

----- 제1
항 및 제436조-----
-----.

第530條의5(分割計劃書의 기재사항) ①-----

-----.

1. (현행과 같음)
2. 설립되는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3. 설립되는 會社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4. · 5. (현행과 같음)

6. 設立되는 會社의 資本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②分割後 會社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存續하는 會社에 관하여 分割計劃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資本과 準備金의 額

2. ~ 6. (생략)

第530條의6(分割合併契約書의 기재사항) ①分割되는 會社의 일부가 다른 會社와 合併하여 그 다른 會社(이하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라 한다)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分割合併契約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증가할 資本의 總額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②·③ (생략)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第234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

6. ----- 자본금 -----

7. ~ 10. (현행과 같음)

②-----

-----.

1. ----- 자본금 -----

2. ~ 6. (현행과 같음)

第530條의6(分割合併契約書의 기재사항)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 자본금 -----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

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략)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④ (생략)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 집행임원·감사-----~~

~~----- 이사·집행임원-----~~

④·⑤(현행과 같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08조의9 및 제542조-----~~

⑥ -----

~~-----제324조, 제408조의9-----~~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7.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이사·집행임원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하려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
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할 때에는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
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
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
다.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
계자와의 거래) ① (생략)

1. (생략)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3. (생략)

----- 과반수가 -----
-----.

⑤ -----단서에서 규정하는-----

-----때-----

----- 제363
조의2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의 권리를 -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
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해 연
도의 해당일) -----.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
계자와의 거래) ①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현행과 같음)

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생략)

<신설>

행임원-----

3.(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

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

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
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
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
로 한다.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
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
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

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43條(定款의作成, 絶對的記載事項) ① (생략)

②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각 사원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생략)

第543條(定款의 作成, 絶對的 記載事項)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資本의 總額

3. ~ 5. (생략)

③ (생략)

第545條(社員總數의 制限) ①社員

의總數는50人을超過하지못한다
그러나特別한事情이있는境遇에
法院의認可를얻은때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②前項의規定은相續또는遺贈으
로因하여社員의數에變更이생기
는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第546條(資本總額, 出資 1座의 金

額의 制限) ①會社의資本總額은
1千萬원이상으로하여야한다.

②出資 1座의金額은 5千원이상
으로均一하게하여야한다.

第549條(設立의登記) ① (생략)

②第1項의登記에서다음의事項
을登記하여야한다.

1. ~ 3. (생략)

4.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정한
때에는 그 姓名

5. ~ 7. (생략)

2. 자본금의 총액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
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第549條(設立의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
등록번호

5. ~ 7. (현행과 같음)

③ 有限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 시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에 있어서는 第2項第1號 및 第3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④ (생략)

第556條(持分の讓渡) ①社員은 第585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을 때에 限하여 그 持分の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으로 讓渡의 制限을 加重할 수 있다

②讓渡로 因하여 社員의 總數가 第545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遺贈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讓渡는 效力이 없다

③社員相互間의 持分の 讓渡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定款으로 다른 定함을 할 수 있다

第560條(準用規定) ①第339條, 第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第560條(準用規定) ① 사원의 지

② 社員總會를召集함에는會日을定하고1週間前에各社員에對하여書面으로그通知를發送하여야한다 그러나이期間은定款으로短縮할수있다

③ 第363條第2項과第364條의規定은社員總會의召集에準用한다

第572條(少數社員에依한總會召集請求) ① 資本의總額의100分の3이상에該當하는出資座數를가진社員은會議의目的事項과召集의理由를記載한書面을理事에게提出하여總會의召集을請求할수있다

② · ③ (생략)

第576條(營業讓渡等과事後設立)

① 有限會社가第374條第1號乃至第3號에揭記한行爲를함에는第585條의規定에依한總會의決議가있어야한다

② 前項의規定은有限會社가그成立後2年內에成立前으로부터存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第572條(少數社員에依한總會召集請求) ① 자본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576條(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한다.

② -----

在하는財産으로서營業을爲하여
繼續하여使用할것을資本의20分
1以上에相當한對價로取得하는
契約을締結하는境遇에準用한다

第579條(財務諸表의 作成) ①理
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야 한
다.

- 1. 2. (생략)
- 3.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②·③ (생략)

第581條(社員의會計帳簿閱覽權)
①資本의100分の 3이상에該當
하는出資座數를가진社員은會計
의帳簿와書類의閱覽또는謄寫를
請求할수있다

② (생략)

第582條(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會社의業務行에關하여不正行
爲또는法令이나定款에違反한重
大한事由가있는데에는資本總額
의100分 3이상에該當하는出資

-----자본금-----

第579條(財務諸表의 作成)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③ (현행과 같음)

第581條(社員의會計帳簿閱覽權)
①자본금-----

②·③ (현행과 같음)

第582條(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

-----자본금-----

座數를 가진社員은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爲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②·③ (생략)

第583條(準用規定) ①第449條第1項·第2項, 第450條, 第452條, 第453條, 第453條의2, 第457條의2, 第458條 乃至 第460條, 第462條, 第462條의3 및 第466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計算에 準用한다

② (생략)

第586條(資本增加의 決議)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더라도 資本增加의 決議에서 이를 定할 수 있다

1.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付與할 出資座數
2. 資本의 增加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3. 增加할 資本에 對한 出資의 引受權을 付與할 者의 姓名과 그 權

②·③ (현행과 같음)

第583條(準用規定) ① 유한회사 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

利의內容

第587條(增資의境遇의出資引受權의付與) 有限會社가特定한者에對하여將來그資本을增加할境遇에있어서出資의引受權을付與할것을約束함에는第585條에定하는決議에依하여야한다

第588條(社員의出資引受權) 社員은增加할資本에對하여그持分에따라出資를引受할權利가있다그러나前2條의決議에서出資의引受者를定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第589條(出資引受의方法) ①資本增加의境遇에出資의引受를하고자하는者는引受를證明하는書面に그引受할出資의座數와住所를記載하고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한다

② (생략)

第590條(出資引受人의地位) 資本增加의境遇에出資의引受를한者는出資의納入의期日또는現物出資의目的인財産의給與의期日로

명과 그 권리의 내용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出資)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第588條(社員의出資引受權)-----
-----자본금-----

第589條(出資引受의方法) ①자본금-----

② (현행과 같음)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부터利益配當에關하여社員과同一한權利를가진다

第591條(資本增加의登記) 有限會社는資本增加로因한出資全額의納入또는現物出資의履行이完了된날로부터 2週間내에 本店의所在地에 資本增加로因한變更登記를하여야한다

第592條(增資의效力發生) 資本의增加는本店所在地에서前條의登記를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第593條(現物出資等에關한社員의責任) ①第586條第1號와第2號의財産의資本增加當時의實價가資本增加의決議에依하여定한價格에顯著하게不足한때에는그決議에同意한社員은會社에對하여그不足額을連帶하여支給할責任이있다

② (생략)

第594條(未引受出資等에關한理事等의責任) ①資本增加後에아직引受되지아니한出資가있는데에는理事와監事가共同으로이를引

제591조(자본금 증가의登記)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第593條(現物出資等에關한社員의責任) ①-----
-----자본금-----

② (현행과 같음)

第594條(未引受出資等에關한理事等의責任) ①자본금-----

受한 것으로본다.

②資本增加後에아직出資全額의
納入또는現物出資의目的인財産
의給與가未畢된出資가있는데에
는理事와監事는連帶하여그納入
또는給與未畢財産의價額을支給
할責任이있다.

③ (생략)

第595條(增資無效의訴) ①資本增
加의無效는社員,理事또는監事
에限하여第591條의規定에依한
本店所在地에서의登記를한날로
부터6月內에訴만으로써이를主張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596條(準用規定) 第334條, 第5
48條와第576條第2項의規定은資
本增加의境遇에準用한다.

第597條(同前) 第439條第1項, 第
2項, 第443條, 第445條와第446
條의規定은資本減少의境遇에準
用한다

第604條(株式會社의有限會社에의
組織變更) ① (생략)

②前項의組織變更의境遇에는會
社에現存하는純財産額보다많은

②자본금-----

③ (현행과 같음)

第595條(增資無效의訴) ①자본금

② (현행과 같음)

第596條(準用規定) 제421조제2항

-----자
본금-----

第597條(同前) -----

-----자본금-----

第604條(株式會社의有限會社에의
組織變更) ① (현행과 같음)

②-----

金額을資本의總額으로하지못한
다

③·④ (생략)

第605條(理事, 株主의純財産額填
補責任) ①前條의組織變更의境
遇에會社에現存하는純財産額이
資本의總額에不足하는때에는前
條第1項의決議當時의理事와株
主는會社에對하여連帶하여그不
足額을支給할責任이있다

② (생략)

第607條(有限會社의株式會社에의
組織變更) ①有限會社는總社員
의一致에依한總會의決議로그組
織을變更하여이를株式會社로할
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는組織變更時에
發行하는株式의發行價額의總額
은會社에現存하는純財産額을超
過하지못한다

③第1項의組織變更은法院의認
可를얻지아니하면그效力이없다

④第1項의組織變更의境遇에會
社에現存하는純財産額이組織變
更時에發行하는株式의發行價額
의總額에不足하는때에는第1項

-----자본금-----

③·④ (현행과 같음)

第605條(理事, 株主의純財産額填
補責任) ①-----

자본금-----

② (현행과 같음)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
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
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
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
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의決議當時의理事,監事와社員은會社에對하여連帶하여그不足額을支給할責任이있다. 이境遇에第550條第2項과第551條第2項,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⑤第340條第3項, 第601條第1項, 第604條第3項과前條의規定은第1項의組織變更의境遇에準用한다

第614條(代表者,營業所의設定과登記) ①外國會社가大韓民國에서營業을하고자하는때에는大韓民國에서의代表者를定하고營業所를設置하여야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 제2항 및 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 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第614條(代表者,營業所의設定과登記)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

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617條(適用法規) 外國에서設立된會社라도大韓民國에그本店을設置하거나大韓民國에서營業할 것을主된目的으로하는때에는大韓民國에서設立된會社와同一한規定에依하여야한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第622條(發起人, 理事其他의任員等의特別背任罪) ①會社의發起人, 業務執行社員, 理事,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또는第567條의職務代行者, 支配人其他會社營業에關한어느

第622條(發起人, 理事其他의任員等의特別背任罪) ①-----
-----이사, 집행임원-----

種類 또는 特定한事項의委任을 받은使用人이그任務에違背한行爲로써財産上의利益을取하거나第三者로하여금이를取得하게하여會社에損害를加한때에는10年以下의懲役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② (생략)

第625條(會社財産을危殆롭게하는罪) 第622條第1項에 規定된 者, 檢査人, 第298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證人(法務法人과 公證認可 合同法律事務所의 당해 業務執行辯護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第29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定人이 다음의行爲를한때에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2. (생략)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利益이나 利子の 配當을 한 때

4.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第625條(會社財産을危殆롭게하는罪) -----

-----.

1. 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현행과 같음)

第625條의2(株式의 取得制限 등
에 違反한 罪) 第635條第1項에
계기한 者가 第342條의2第1項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26條(不實報告罪) 會社의 理事,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
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가 第60
4條 또는 第607條의 組織變更의 境遇
에 第604條第2項 또는 第607條第2
項의 純財産額에 關하여 法院 또는
總會에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
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29條(超過發行의 罪) 會社의 發
起人, 理事 또는 第386條第2項 또
는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超過
하여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5年以
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
에 위반한 죄)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
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
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
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
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
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
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
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關한贈收賂罪) ① (생략)

- 1. (생략)
- 2. 第3編에定하는訴의提起, 發行株式의總數의 100分の1 또는 100分の3이상에該當하는株主, 社債總額의 100分の10이상에該當하는社債權者 또는 資本의 100分の3이상에該當하는出資座數를가진社員의權利의行使

- 3. (생략)
- ② (생략)

第634條의2(株主의 權利行使에關한 利益供與의 罪) ① 株式會社의 理事·監査委員會 委員·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또는 第415條의 職務代行者·支配人 기타 使用人이 株主의 權利의 行使와 關連하여 會社의 計算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關한贈收賂罪)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자
본금-----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第634條의2(株主의 權利行使에關한 利益供與의 罪) ① 株式會社의 理事, 監査委員, 監事, 第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第567條의職務代行者가다음의事項에該當한行爲를한때에는500萬원이하의過怠料에處한다. 다만, 그行爲에對하여刑을科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항·제415조·제542조제2항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本編에定한登記를懈怠한때
- 2. 本編에定한公告또는通知를懈怠하거나不正한公告또는通知를한때
- 3. 本編에定한檢査또는調査를妨害한때
- 4. 本編의規定에違反하여正當한事由없이書類의閱覽또는謄寫, 謄本또는抄本の交付를拒否한때
- 5. 官廳, 總會·社債權者集會 또는 發起人에게 不實한報告를하거나또는事實을隱蔽한때
- 6. 株券·債券 또는 新株引受權證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 1. 이 편(編)에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2. 이 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3. 이 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

한 때

7. 正當한事由없이株券의名義改書를하지아니한때
8. 法律또는定款에定한理事또는監事의員數를闕한境遇에그選任節次를懈怠한때
9. 定款·株主名簿 또는 그 複本, 社員名簿·社債原簿 또는 그 複本, 議事錄·監查錄·財産目錄·貸借對照表·營業報告書·事務報告書·損益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決算報告書·會計帳簿, 第447條·第534條·第579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附屬明細書 또는 監查報告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0. 法院이選任한清算人에對한事務의引繼를懈怠하거나이를拒否한때

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꺾(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8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清算의終結을遲延할目的으로第247條第3項, 第535條第1項또는第613條第1項의期間을不當하게長期間으로定한때

12. 第254條第4項, 第542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請求를 懈怠한 때

13. 第589條第2項의規定에 違反하여 出資의 引受人을 公募한때

14. 第232條, 第247條第3項, 第439條第2項, 第527條의5, 第530條第2項, 第530條의9第4項, 第530條의11第2項, 第597條, 第603條 또는 第60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社의 合併・・分割・分割合併 또는 組織變更, 會社財産의 處分 또는 資本의 減少를 한때

15. 第260條, 第542條第1項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社財産을 分配한때

16. 第302條第2項, 第347條, 第420條, 第420條의2, 第474條第2項 또는 第514條의 規定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를 위반

에 違反하여 株式請約書·新株引受權證書 또는 社債請約書を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7. 第342條 또는 第56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 또는 持分の 失效節次, 株式 또는 持分の 質權의 處分을 懈怠한 때

18. 第343條第1項 또는 第56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式 또는 出資를 消却한 때

19. 第355條第1項, 第2項 또는 第6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券을 發行한 때

19의2. 第358條의2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株主名簿에 記載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第363條의2第1項 또는 第5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主가 提案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第365條第1項·第2項, 第5

하여 株式청약서, 新주인수권 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株式 또는 지분의 질권(質權)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

78條의規定또는第467條第3項, 第582條第3項의規定에依한法院의命令에違反하여總會를召集하지아니하거나定款에定한곳以外의곳에서또는第363條, 第364條, 第571條第2項·第3項의規定에違反하여總會를召集한때

20의2. 第374條第2項, 第530條第2項 또는 第530條의11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公告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통지 또는 公告를 한 때

21. 第396條第1項, 第448條第1項, 第510條第2項, 第522條의2第1項, 第527條의6第1項, 第530條의7, 第534條第3項, 第542條第2項, 第566條第1項, 第579條의3, 第603條 또는 第613條의規定에違反하여 帳簿 또는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21의2. 第412條의4第3項의 規

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

- 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調査를 거부한 때
22. 第458條乃至第460條 또는 第58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使用한 때
- 22의2. 第464條의2第1項의 期間내에 配當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
23. 第47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債를 募集하거나 舊社債를 償還하지 아니한 때
24. 第478條第1項 또는 第6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券을 發行한 때
25. 第536條 또는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 25의2.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26. 第6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命令에 違反한 때
27. 第55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에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

<p><u>여 持分에 對한 指示式 또는 無記名式의 證券을 發行한 때</u></p> <p>②發起人또는理事가株式의引受로因한權利를讓渡한때에도 第1項과같다.</p> <p>③·④ (생략)</p> <p><u>第637條(法人에 對한罰則의適用)</u> <u>第622條, 第623條, 第625條, 第627條, 第628條또는第630條第1項에揭記한者가法人인때에는本章의罰則은그行爲를한理事, 監事其他業務를執行한社員또는支配人에適用한다</u></p>	<p><u>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u></p> <p>② 받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u>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p>
--	---